

#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2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2019. 7. 25.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찾동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 
위원의 직위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당연직 위원 중 혁신 분야 관련 실·본부·국장을 마을공동체 분야  
관련 실·본부·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함(안 제6조)
- 나. 그 밖에 오기사항을 정비함(안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- 다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 (2019. 8. 16.~ 9. 5.) 결과: 의견없음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(행정, 혁신, 여성, 복지, 건강) 실본부국장”을 “(행정, 마을공동체, 여성, 복지, 건강) 분야의 실·본부·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위원장은”을 “위원장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운영위원회) 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서울특별시 찾동 관련(행정, 혁신, 여성, 복지, 건강) 실본부국장을 당연 직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위촉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 <p>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⑥ ~ ⑧ (생 략)</p>	<p>제6조(운영위원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(<u>행정, 마을공동체, 여성, 복지, 건강</u>) 분야의 실·본부·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위원장은 -----.</p> <p>⑥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

#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「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

### 4. 작성자

자치행정과 이연정(02-2133-5834)